

-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-

#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이유

- 예산군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인 보행기 비용을 일부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## 2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항(안 제3조)
- 지원기준, 지원범위, 지원신청·선정에 대한 사항(안 제4조~제6조)
- 지원제외 및 지원회수에 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15조
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  -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
  -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의3
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필요
- 그 밖의
  - 가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  - 나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4. 1. 4. ~ 2024. 1. 11.)
  - 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  - 라. 성별영향평가 : 의견없음(2023.11.7. 가족지원과)

#### 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불편해소를 위하여 노인 보행기 비용을 일부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내용으로는 예산군에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수급권자로 인정된 사람, 독거노인에게 보행기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.